

[붙임 3]

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

(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2항 관련)

제 품 의 종 류			기 준	
			포장공간비율	포장횟수
단위제품	음식료품류	음 료	10% 이하	1차 이내
		주 류	10% 이하	2차 이내
		제과류	20% 이하 (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% 이하)	2차 이내
		건강기능식품(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)	15% 이하	2차 이내
	화장품류	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	15% 이하	2차 이내
		그 밖의 화장품류 (방향제를 포함한다)	10% 이하 (향수 제외)	2차 이내
	세제류	세제류	15% 이하	2차 이내
	잡 화 류	완구·인형류	35% 이하	2차 이내
		문 구 류	30% 이하	2차 이내
		신변잡화류(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)	30% 이하	2차 이내
	의약외품류	의 약 외 품 류	20% 이하	2차 이내
의 류	와이셔츠류·내의류	10% 이하	1차 이내	
종합제품	1차식품, 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제과류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류, 세제류, 신변잡화류	25% 이하	2차 이내	